

I. 테마진단

◆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 동향과 시사점

류건식 선임연구위원

1. 검토 배경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일본정부의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로 복지재정이 더욱 악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확산됨.

○ 2014년 정부 일반회계(세출예산) 중에서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1999년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재정의 수지 적자부분을 국채발행으로 보전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1999년 16조 1,000억 엔 → 2014년 30조 5,000억 엔으로 14조 4,000억 엔 증가

－ 국채발행 규모가 증가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30%를 상회, 정부재정이 위기에 직면할지 모른다는 인식이 확산됨.

<표 1> 일본정부의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사회보장비 추이

(단위: 조 엔, %)

1999년	2005년	2012년	2014년(예산안)
16.1 (19.7%)	20.4 (24.8%)	26.4 (29.2%)	30.5 (31.8%)

주: ()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사회보장비 비중임.
자료: 日本財務省(2014. 2).

■ 또한 보험료 및 조세수입에 의한 복지재원조달보다 국공채 발행과 같은 손쉬운 차입예산을 통해 재원이 조달되고 있어 후세대 부담가중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 2014년 일반회계 세입예산(95.8조 엔)은 조세수입 50.0조 엔(52.1% 비중), 국공채발행 41.2조 엔(43.0% 비중), 기타 4.6조 엔으로 구성됨.

■ 따라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포함한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아베정권은 소비세 인상¹⁾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연금, 의료, 개호, 아동 등 4개 분야의 개혁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

■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제도의 개혁은 2012년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관련 법²⁾과 2013년 8월 사회보장 국민회의가 정부에 제출한 사회보장개혁보고서(개혁의 방향성 제시) 등에 기초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인구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는 우리현실에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사례를 체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향후 연금제도의 개혁방향을 모색하는데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노후소득보장개혁) 내용과 동향, 특징 등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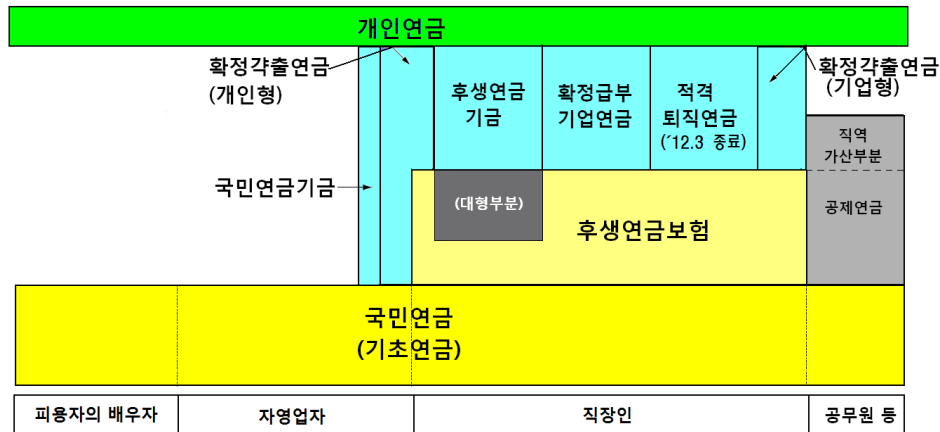
2. 일본의 연금체계 현황 및 구조

■ 일본의 연금체계는 국민연금(1층), 후생연금보험(2층) 등의 공적연금기반 위에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이 보완하는 다층체계임.

1)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이 기존 5%에서 8%로 인상되며 2015년 4월에는 10%로 인상됨.

2) 연금개혁관련법은 연금기능강화법과 피용자연금 일원화법을 의미함.

<그림 1> 일본의 노후소득보장 체계



자료: 厚生労働白書(2013).

- 공적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인 국민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인 후생연금보험, 그리고 특수직역연금인 공제연금으로 구성됨.
- 1층의 기초연금제도는 국민연금으로 모든 현역세대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및 자산과 무관하게 정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면 정액급여를 지급함.
 - － 적용대상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교직원, 근로자의 배우자, 학생 등임.
 - － 기초연금재원은 가입자의 보험료와 국고지원금이며, 2012년 4월 말 현재 월 14,980엔의 정액보험료가 부과되고 2017년 이후부터 16,900엔으로 고정됨.
- 2층의 후생연금보험과 공제연금은 민간근로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모든 가입자의 소득에 대해 동일 보험료율이 적용되며, 이를 토대로 기간에 비례하여 연금급여가 지급됨.
 - － 후생연금보험 재원은 보험료와 적립금의 운용수입으로 충당되며 기초연금과 달리 국고보조는 존재하지 않음.
 - － 공제연금제도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등 특수직역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소득비례부분과 퇴직수당을 보장하는 공적연금제도로 개혁조치에 따라 후생연금보험으로 통합됨.

<표 2> 일본의 사적연금 체계

퇴직연금		개인연금	국민연금기금
후생연금기금		개인연금보험	(자영업자 대상 연금제도)
적격퇴직연금(2012.3 종료)		연금식적립 상해보험	
확정급부기업연금		개인연금신탁	
확정각출형 기업연금	규약형	연금형예금	
	기금형	증권형연금	
개인형 확정각출연금		재형연금저축	
비적격 퇴직연금		—	

자료: 企業年金聯合(2012. 3)을 기초로 작성함.

- 3층의 후생연금기금, 확정기여연금 등은 개인 및 기업의 선택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각 제도별로 가입대상이 구분되어 있으며 보험료 및 연금 급여가 상이함.

■ 일본의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원화된 공적연금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퇴직급여제도는 법률상 강제하는 규정이 없는 임의 제도로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일본의 연금체계가 복잡한 이유는 노후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자영업자와 노동시장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하는 샐러리맨의 노후생활을 지탱하기 위한 필요 연금수준이 다르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기 때문임.

3. 일본의 연금제도 개혁내용과 동향

가. 2012년 이전 연금개혁

■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이후 인구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공적연금에 대한 사회적 부담증가와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함.

-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장기적인 불황에 빠지면서 연금보험료 징수율이 감소하고 저출산에 따른 보험료 납입인구가 줄면서 연금재정이 갈수록 악화됨.
- 이에 1960년대 초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지 32년 후인 1994년부터 대대적인 공적연금의 개혁을 추진함.
- 2000년에는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2013년 60세 → 2025년 65세)하고 후생연금의 급여율을 전년수준에 비해 5%로 인하하며 연금급여를 물가에 연동하는 연금개혁이 이루어짐.
- 2004년에는 평균수명의 증가를 연금액에 반영하는 거시 경제슬라이드 방식으로 전환, 연금급여수준을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사실상의 준(準) 확정기여형 제도를 도입함.
- － 또한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5년마다 재정검증 실시, 기초연금 급부지출의 국고부담비율을 기존의 1/3에서 2009년까지 1/2로 상향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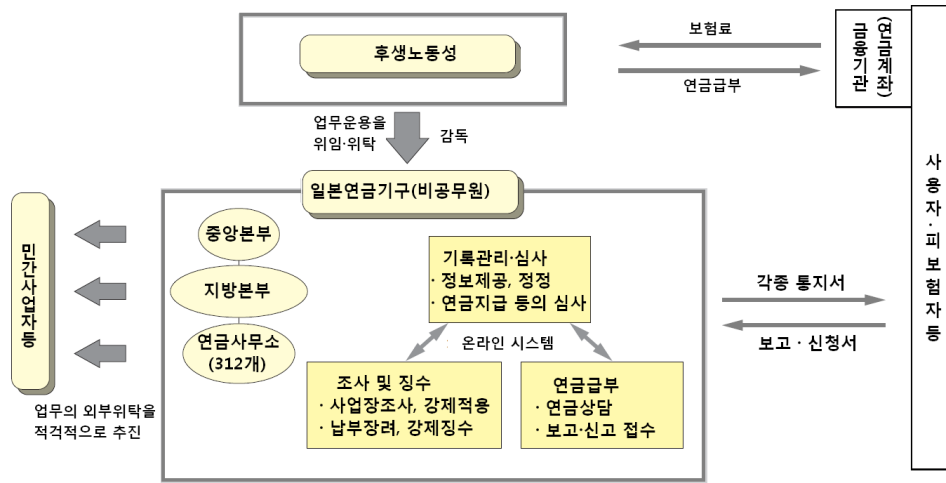
<표 3> 2012년 이전의 공적연금개혁

연도	개혁 주요 내용
1994	2001년부터 기초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상향 조정 결정
2000	• 후생연금보험의 급여율 인하 • 소득비례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단계적 상향조정
2004	• 연금수준(소득비례연금) 점진적 인하 • 국민/후생연금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 • 경제슬라이드의 도입 등 준 DC화
2007	• 고령 소득자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 시행 • 이혼 시 후생연금분할제 도입 •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 시행
2010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로 재편

자료: 厚生労働白書(2013) 등에 의해 작성됨.

- 2007년에는 70세 이후 소득활동 시 후생연금의 지급정지제도시행, 이혼 시 후생연금 분할제 도입, 노령후생연금 연기지급제도(66세 이후 수령하도록 신청가능)를 도입하는 개혁을 추진함.

<그림 2> 일본연금기구의 업무체계



자료: 厚生労働白書(2013).

- 또한 2010년에는 사회보험청의 공적연금 방안 운영, 연금기록관리 및 정보관리의 소홀 등으로 유령연금지급 사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사회보험청을 폐지하고 공법인(公法人)성격의 일본연금기구를 설치함.
- 일본연금기구는 법률에 따라 정부가 위탁하는 운영업무를 수행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재정 및 운영책임은 정부가 맡음.

■ 이에 반해 사적연금의 개혁은 공적연금 개혁에 따른 사적연금의 역할 확대, 후생연금기금의 수익률 악화에 따른 적립금 부족문제 확대, 능력·성과주의 중심으로의 고용 및 급여체계 변화 등으로 이루어짐.

- 2001년 개혁을 통해 기존 적격퇴직연금을 보완한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2002년에 기업이 대신했던 공적연금 기능의 일부를 정부로 환원하는 공적연금 대행제도의 의무화를 폐지함.

<표 4> 2012년 이전의 사적연금 개혁

연도	개혁 주요 내용
2001년	확정각출연금법 제정
2002년	• 퇴직급여충당금 폐지 • 캐시밸런스 플랜 도입 • 확정급부기업연금법 제정 • 후생연금기금 대행제도 국가로 환원 • 다수가 확정급여퇴직연금(기금형)으로 이행
2010년	• 일본연금기구 출범 • 확정각출연금 부담금 한도 상향 조정
2012년	• 적격퇴직연금제도 폐지 • 확정각출연금 매칭기여 허용

자료: 厚生労働白書(2013)를 요약 정리함.

- 또한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퇴직연금제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퇴직금 충당금에 대한 손비인정을 2002년 완전 폐지하였으며 2010년에는 확정각출연금 부담금의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사적연금 개혁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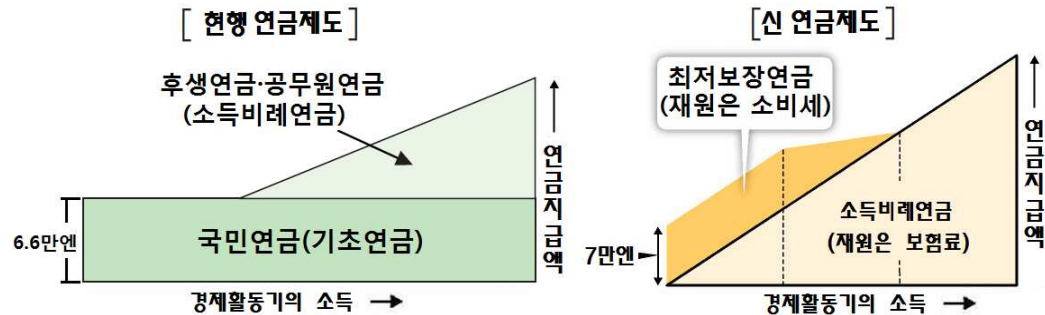
나. 2012년 이후 연금개혁

1) 취약 계층 보호 관련 개혁

■ 최저 보장 연금제도의 도입추진

-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후생연금(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조합 시킨 스웨덴방식의 새로운 연금제도 도입을 장기적인 개혁과제로 검토함.

<그림 3> 현행 일본의 연금제도와 신 연금제도의 비교



자료: 日本經濟新聞 신문기사(2013. 2. 11).

- 2013년 8월 사회보장국민회의가 최저보장연금제도 도입을 아베정권에 적극 제안함에 따라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최저보장연금은 조세방식으로 운영하는 연금제도로 모든 수급자에게 최대 7만 엔을 지급하여 소득비례연금과 최저보장연금을 합쳐 최소 약 7만 엔 이상의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 생애 평균 연간소득을 기준(보험료 납부액)으로 연간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일 경우 급부액을 전액 지급하고 연간소득이 일정기준을 상회할 경우 단계적으로 경감된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임.

■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연금급부가산

- 일본은 「연금생활자 지원급부금 지급에 관한 법률(2012.11.16)」에 근거하여 연금제도의 최저보장기능 강화를 도모하고 고령자 등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자와 장애인에 대한 연금급부 가산을 2015년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임.
- 저소득계층(연금을 포함한 종합소득 77만 엔 이하)의 노령기초연금 수급자에게 기준액(5천 엔)에 납입기간을 곱한 금액을 생활지원급부금으로 지급하며, 적용대상자는 약 5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음.
 - 다만 급부금지급으로 종합소득이 77만 엔을 상회하는 일정범위의 수급자에게는 이보다 적은 금액의 생활지원급부금이 지급됨.
- 또한 일정한 장애기초연금 또는 유족기초연금의 수급자에게는 월 5천 엔(1급 장애인의 경우 월 6.25천 엔)의 장애연금생활지원급부금 또는 유족연금생활지원급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적용대상자는 약 190만 명으로 추정됨³⁾).

■ 보험료 납입 면제 및 연금수급 자격기간 단축

- 노령기초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반 국내거주자가 원칙적으로 25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여 65세에 도달한 경우에 지급하므로 저소득 등의 사유로 보험료납입이 곤란한 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입면제제도를 통해 최소가입기간 충족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 또한 일본에서는 25년의 납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무연금자가 약 118만명에 이르고 있어 노후에 빈곤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 이에 일본정부는 무연금자에게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무연금자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의 수급자격 기간을 2015년 10월부터 현재 25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할 예정임.

■ 단시간 근로자의 후생연금과 건강보험 적용

- 일본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파트타임 등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장 격차해소와 모순점 개선을 위해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함.
- － 일본에서 종전의 단시간 근로자는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에 의무가입 적격요건인 주당 30시간 이상, 연간 120만 엔 이상의 소득요건에 미달하여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
- － 그러나 그 동안 일본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4대 보험 등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단시간 근로자를 위주로 고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음.
- － 또한 사용자가 4대 보험료를 경감하고자 배우자가 있는 주부의 경우 주당 30시간 이하 및 연간급여 120만 엔 미만의 범위로 고용하고 있음.
- 따라서 2016년 10월부터 파트타임 주부 등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장래 노령기초연금에 추가하여 노령후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의료보험 급부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연금제도를 개혁함.

3) 厚生労働省(2012. 8), p. 16.

- 새로운 적용요건은 ①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 이상일 것, ② 월 임금이 8.8만 엔이상(연간소득 106만 엔 이상)일 것, ③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④ 학생은 적용제외, ⑤ 종업원 수가 501인 이상의 사업장 등임.

■ 유족기초연금의 남녀차별 해소 및 출산 휴가기간 중 보험료부담면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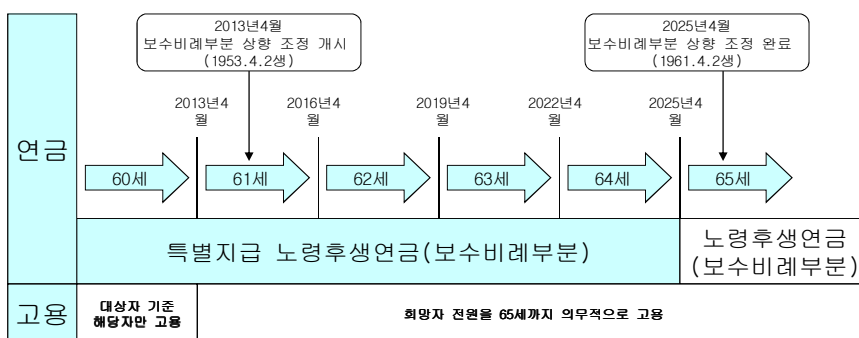
- 남녀 간의 형평성차원에서 2014년 4월부터 유족기초연금 대상자를 종전의 모자가정에서 부자가정으로 확대함.
- 2014년 4월 이전에는 기초연금가입자 사망 시 유족기초연금이 모자가정에는 지급되는 반면, 부자가정에는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유족기초연금 지급에 대한 남녀 간 차이가 발생함.
- 또한 출산을 개선과 미래세대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후생연금의 피보험자에 대해 출산휴직기간의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보험료를 2014년 4월부터 면제함.

2) 연금재정 안정화 관련 개혁

■ 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 등

- 사회보장 국민회의는 저출산·고령화 진전에 따른 공적연금 재정의 파탄 등을 우려하여 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을 66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함.

<그림 4> 후생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 조정과 고령자의 고용



자료: 厚生労働省 홈페이지.

- 이미 국민연금(정액부분)은 2001년부터 지급개시연령이 3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되어 201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이 지급되고 있음.
- 후생연금(보수비례부분)도 2013년 4월부터 지급개시연령이 상향조정되어 남성의 경우 2025년 4월부터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후생연금을 받을 자격이 존재함.
- 그럼에도 일본의 저출산·고령화를 감안할 때 연금재정의 악화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후생연금의 연금개시연령 상향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따라 후생연금의 연금개시연령과 연계된 고용을 통해 후생연금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방안을 개혁과제로 제안하기 이룸.
- 또한 사회보장국민회의는 고소득자의 연금급부에 대한 과세 강화를 장기적인 계획과 제로 제안함.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연금수입이 연 700만 엔일 때 183.5만 엔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공제부분을 축소하여 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안이 제안됨.

■ 후생연금중심으로 공적연금 일원화

- 공적연금 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12년 국회를 통과한 「피용자연금 일원화법」에 의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을 2015년 10월부터 후생연금으로 일원화함.
- 이는 우리나라 공무원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공제연금이 종료되어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으로 통합화되는 것을 의미함.
- 공무원 등은 2015년 10월부터 전 국민이 가입하는 국민연금(기초연금)과 후생연금(소득비례부분)의 강제가입 적용대상이 되어 일반 직장인과 동등한 수준의 보험료와 연금급여가 적용됨.
- 공제연금과 후생연금의 제도 간 격차는 기본적으로 후생연금에 맞추어 개선하고, 공제연금(2011년 15.862%)의 보험료율은 2018년(단, 사학연금은 2027년 이후)까지 후생연금(2011년 16.412%)의 2017년 목표보험료율 18.3%로 통일함.

<표 5>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간의 차이 개선내용

구분	후생연금	공제연금	개선내용
피보험자의 연령 제한	70세까지	없음	후생연금으로 통일
유족연금의 급부 범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형제 등의 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 조부모, 유가족이 없을 경우 상속인	후생연금으로 통일
보험요율	2017년 18.3%에 고정	2018년까지 매년 0.35%씩 인상	후생연금으로 통일
연금수급 기간 중에 다른 공적연금 가입시	65세까지: 28만 엔(임금+연금) 초과 시 일부 또는 전부 지급 정지 65세 이후: 46만 엔(임금+연금) 초과 시 일부 또는 전부 지급 정지	28만 엔(임금+연금)* 초과 시 일부 또는 전부 지급정지 * 단, 공제연금수급자가 민간기업에 취업 시 46만 엔 초과 시	후생연금으로 통일
장애연금 지급요건	보험료 납입기간 2/3경과 요건	보험료 납입기간 요건 없음	후생연금으로 통일
지급개시 연령 성별 차등적용	여성이 5년 단위 늦게 상향조정	남성과 여성 동일 일정	현행 유지
직역 가산금	없음	존재	후생연금으로 통일

자료: 厚生労働省(2012. 2).

－ 또한 공제연금의 3층 부분(직역가산)은 폐지하고, 공적연금의 가입연령제한, 유족연금의 승계 등은 후생연금 수준으로 통일하여 공무원과 직장인의 공적연금 형평성 문제를 해소함.

- 공적연금 일원화의 목적은 공무원이 가입하는 공제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을 통합하여 공적연금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있음.

3) 사적 연금 역할 관련 개혁

■ 퇴직급여 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

- 중소·영세기업들이 퇴직급여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기업에

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퇴직급여 보조금지원제도를 도입함.

-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는 중소기업자의 상호공제와 국가 지원으로 퇴직급여제도를 확립하고 중소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중소기업 진흥이 목적임.
- 중소기업 퇴직금 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장의 업종은 주로 소매업, 서비스업,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적용함.

<표 6> 중소기업퇴직금공제 적용대상 사업장 규모

업종 구분	상용근로자		자본금·출자금
소매업	50인 이하	또는	5천만 엔 이하
서비스업	100인 이하		5천만 엔 이하
도매업	100인 이하		1억 엔 이하
기타(제조·건설업 등)	300인 이하		3억 이하

자료: 中小企業退職金控除機構(2012).

- 퇴직금공제에 가입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공제보험료 부담의 2분의 1(상한 5,000엔)을 가입 후 4개월째부터 1년간 국가가 지원하며 단기근로자(월 공제보험료 4,000엔 이하)는 추가적으로 지원함.
- 중소기업이 근로자퇴직금공제기구(운영주체)와 퇴직금공제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공제보험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동 공제기구에서 퇴직금이 직접 지불되는 구조임.
- 또한 동일업종 내에서 여러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취약계층의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부가 지원하는 특정업종 퇴직급여 공제제도를 시행함.
- 퇴직급여 공제는 건설업·청주제조업·임업사업장에 종사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며 건설업퇴직급여공제, 임업퇴직급여공제 등이 이에 해당함.

■ 미국식 IRA 제도의 도입추진

- 일본은 2001년 퇴직연금 개혁에 따라 2002년부터 기업형 확정각출연금 및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을 도입·운영하고 있으나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의 경우 시행 11년이 지났

으나 가입자 수가 20만 명 미만에 그치는 등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임.

－ 현행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의 문제점으로는 가입자격의 제한과 연금자산의 통산성, 세제혜택의 미흡 등을 들 수 있음.

－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제외한 계층은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기금형 가입자가 직장이동 시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으로 연금자산을 통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 또한 각 퇴직연금별로 세제혜택에 차이가 있어 대기업과 중소·영세기업 간, 퇴직연금가입자 간 세제혜택에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음.

○ 이에 아베정권은 전 국민으로의 사적연금가입 확대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확대를 위해 미국식 IRA제도를 검토하여 개인형 연금적립 비과세제도(일본판 IRA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할 예정임.

－ 일본판 IRA제도는 일본에 거주하는 개인으로 20세 이상 65세 미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가입절차는 가입자가 금융기관의 영업소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금융기관과 개별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전용계좌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임.

－ 가입금액은 연간 120만 엔을 한도로 하고 세제혜택은 기여 시 과세, 운용 및 급여단계에서 비과세를 적용하므로 개인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융자산에 발생하는 이자 및 수익 등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함.

■ 퇴직연금의 보급·확대 조치 모색

○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후생연금기금에서 신 퇴직연금제도로의 원활한 이행지원, 60세 미만의 중도인출요건 완화, 사업주 각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업원의 매칭 각출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함.

<표 7> 퇴직연금의 보급·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구 분	개선 방향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가입유도	후생연금기금에서 신퇴직연금제도 이행 지원, 60세 미만의 중도인출요건 완화 등
확정각출연금의 유연한 설계	각출한도액의 인상, 매칭각출의 완전자유화, 제도설계 관련 수속요건 완화 등
퇴직연금 지속가능성 향상	특별법인세 철폐, DB형의 급부감액요건 완화, 과거근무채무 상각방법의 탄력화 등
개인의 자조노력에 정부지원	개인형 DC에 대한 중도인출요건 완화 및 각출한도액의 인상 등

- 또한 노사가 합의하여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확정각출연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퇴직급부의 제도설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함.
- － 확정각출연금에서 각출한도 상한액(연간 61.2만 엔)을 대폭 인상하고 장기적으로는 각출상한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함.
- 특히 연기금 운용 수익에 대한 특별법인세를 폐지하고 확정급부형 퇴직연금에서 과거근무채무 상각방법을 탄력화하여 퇴직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 더불어 개인형 확정각출연금의 가입자 범위를 DB형 가입자, 전업주부, 공무원 등으로 확대하고 자산이전 및 가입수속을 간소화하여 제도의 통산성을 확대하고자 함.

4. 일본 연금제도 개혁의 제반 특징

■ 일본은 연금재정 안정화를 통한 공적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장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파라메타적 연금개혁 중심에서 패러다임적 연금개혁으로 전환하고 있는 특징을 보임.

- 일본의 연금개혁 초기는 공적연금 단일화 등과 같은 개혁보다 연금급부 인하, 연금지급 개시연령 인상, 연금보험료 인상과 같이 보험료와 급부수준을 조정하는 연금정책을 주로 추진하였음.
- － 부분적 연금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경향이 현저함.
- 2012년 이후부터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부분으로 분리된 공적연금제도의 통합을 적

극 검토하고 스웨덴식 최저소득보장연금제도 도입을 계획하는 등 패러다임적 연금개혁으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 또한, 공적연금 제도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연금재정의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공제연금과 근로자의 공적연금을 과감하게 통합하기에 이름.

■ 또한 저성장 경제 및 노동시장 유연화, 임금 다양화 등의 시장환경에 부합하기 위하여 새로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됨.

- 즉, 적격퇴직연금(2012)과 후생연금기금(2022년)을 폐지하는 등 경제성장기 연금모델을 과감히 개혁하는 한편, 노동시장 및 급여 유연화에 부응하는 확정각출연금과 확정급부기업연금을 적극적으로 보급하여 사적연금기능 제고에 중점을 둠.
- 최근에는 사적연금 활성화에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예: 특별법인세 폐지, 캐시밸런스 플랜의 탄력화, 집단운용형 DC 도입)를 완화하여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짐.

■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의 소득보장기능이 제고되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임.

- 공적연금부문에서는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저소득·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연금급부를 지급하고 단시간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간 사회보장격차 해소를 위해 후생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소득보장대책이 마련됨.
- 사적연금부문에서는 영세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일정한 보조금을 지원해 주거나 단시간 근로자 및 주부 등에게 연금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연금제도 도입을 통해 사적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함.
- － 최근 아베정권은 소득세 인상 후 세제역진성을 고려하여 저소득계층에 현금지급을 추진하는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5.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의 공적 및 사적 연금 도입 시 주요 벤치마킹이 되었던 일본의 연금개혁은 향후 우리나라가 고령화의 진행에 따라 겪어야만 하는 연금문제의 선행사례로서 우리나라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첫째, 일본이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공·사 간 유기적인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거울삼아 공사연금 간의 역할분담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전반에 관한 개혁 로드맵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즉, 저출산·고령화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연금재정악화)을 간과하여 적기에 연금개혁이 이루어지 못했던 일본 사례는 공적연금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즉, 정부의 차입예산을 통하여 연금재원을 확보하는 일본의 전철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공적연금제도 운영을 위해 연금개혁의 기본 틀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본적인 연금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임.

○ 즉,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악화와 제도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수직역 연금의 저부담·고급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개혁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공무원과 근로자 간의 공적연금 형평성 개선사례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화와 직종 간의 연금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큼.

■ 셋째, 공사연금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노후소득의 사각지대(저소득 취약계층)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중심으로 연금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점에서 영세사업장(4인 이하),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퇴직연금 가입 유인책 등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에서는 최근 연금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인, 단시간 근로자 등을 위한 소득보장기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사적연금이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연금세제 혜택 강화, 연금자산운용 규제의 완화, 미국식 IRA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적극 유도하는 방향 검토가 요구됨.

<참 고 문 헌>

内閣府(2013. 7), 平成25年度 年次經濟財政報告(經濟財政白書).

財務省(2012. 8), 社会保障の安定財源の確保等を図る税制の抜本的な改革を行うための消費税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等の法律案 成立.

_____ (2014. 2), 日本の財政関係資料.

厚生労働省(2010), 公的年金財政状況報告 附屬資料.

_____ (2013. 8), 平成25年版 厚生労働白書.

厚生労働省(2012. 2), 被用者年金制度の一元化等を図るための厚生年金保険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_____ (2012. 8), 公的年金制度の財政基盤及び最低保障機能の強化等のための国民年金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_____ (2013. 12), 持続可能な社会保障制度の確立を図るための改革の推進に関する法律概要.

独立行政法人勤労者退職金共済機構(2013. 3), 平成4事業年度 事業報告書.

社会保障制度改革報告書(確かな社会保障を将来世代に伝えるための道筋)(2013. 8).

森信 茂樹・河本 敏夫(2011. 3), 「日本版IRA」(個人型年金積立金非課税制度)導入の提言, 財務省財務総合政策研究所.

小野 正(2011. 11. 26), 非正規労働者と企業年金, 日本年金学会シンポジウム.

_____ (2013. 5), 企業年金の課題とその将来像, 日本年金学会誌, 制31號.

山口 修(2013. 12), 公的年金の現状と課題, 日本年金学会誌, 制32號.

山田千秀(2011), 企業年金等の拡充に向けて, 厚生労働委員会調査室.

中嶋 邦夫(2012, 4, 25), 2012年 年金関連法案のポイント, ニッセイ基礎研究所.

堀江奈保子(2009. 8), 廃止まで2 年半となった適格退職年金, みずほ総合研究所.

石田成則(2010), 公私役割分担の考え方と年金政策, 厚生労働省.

企業年金聯合(2012. 3), 企業年金に関する基礎資料.

日本經濟新聞(2013. 2. 11).